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백혈구 수,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”을 “혈색소 양, 적혈구 수, 백혈구 및 혈소판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는 별지 제104호의5서식에 따른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의 성격에 따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

2. 「의료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, 「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

3. 「수의사법」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, 「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

별지 제10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] 방사선작업종사자 [] 수시출입자
[] 방사선관계종사자

건강진단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진단대상	성명	생년월일	직종(면허종별)
	소속 기관 및 부서명		근무시작일
검사일자			
문진사항	과거 질병력		
	가족력		
	방사선 피폭증상 유무 : [] 없음 [] 있음 (※ 증상이 있는 경우 상세내용을 하단에 기재)		
	방사선 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·내용·기간·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애 유무		
	그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		
임상진찰	(※ 눈/피부/신경계/조혈계 등의 증상 기재)		
혈액검사	혈색소 양(Hb)	g/dl	적혈구 수(RBC) $10^6/\mu l$
	백혈구 수(WBC)	$10^3/\mu l$	혈소판 수(PLT) $10^3/\mu l$
기타검사	그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(말초혈액도말검사, 세극등현미경검사 등)		
종합소견			

[]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1조제1항제2호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21조 또는
[] 「의료법」 제37조제2항 및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 또는
[] 「수의사법」 제17조의3제3항 및 「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에 따라
위와 같이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담당 의사명:

면허번호:

연락처:

의료기관명

직인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1조(건강진단) ①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. 1.·2. (생략) 3. 임상검사 및 진찰 가. 임상검사: 말초혈액 중의 <u>백혈구 수,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</u> 나. (생략) 4.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.	제121조(건강진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가. ----- <u>혈색소 양, 적혈구 수, 백혈구 및 혈소판 수</u> 나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는 별지 제104호의5서식에 따른다.

<신 설>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
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
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
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의 성격에
따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
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
본다.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
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
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1항에
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

2. 「의료법」 제37조제2항에
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,
「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
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
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
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
강진단

3. 「수의사법」 제17조의3제3
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
로서, 「동물 진단용 방사선발
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
칙」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
건강진단 또는 같은 항 본문에
따른 건강진단